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10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해민 · 김우영 · 이정현

정춘생 · 손명수 · 차규근

김준형 · 강경숙 · 서왕진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선거인수

2. 확보 투표용지 수

3.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

⑭ 투표참관인은 제13항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받은 후, 문제를 발견할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제162조제5항 전단 중 “제12항까지의”를 “제14항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투표참관) ① ~ ⑫ (생략) <u><신 설></u>	제161조(투표참관)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u>1. 선거인수</u> <u>2. 확보 투표용지 수</u> <u>3.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u>
<u><신 설></u>	<u>⑭ 투표참관인은 제13항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받은 후, 문제를 발견할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u> <u>⑮ 투표참관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u>⑭ 투표참관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④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u>제12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 -----<u>제14항까지</u> <u>의</u>-----. ----- ----- ----- ----- -----. ⑥ (현행과 같음)
--	---